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정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현행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‘과태료 부과기준’에 따라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하도록 하며,

수도권 외 차량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(조기 폐차 포함)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안 제10조제3항과 같이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, 안 부칙과 같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.

 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